

부

령

● **교육부령 제169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0일

교육부장관 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교육장은 제5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의4제1항”을 “영 제17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7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7조의4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의5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7조의4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2 제5호 중 “현금출납부”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설립자)제출서류란의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제9호”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유의사항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설립자)제출서류란의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제9호”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쪽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초본”을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생년월일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해 다시 게시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생년월일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생년월일란 및 출신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학원설립·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강생 현황	정원	현재 인원	비고
()휴원	기간		
	사유		
()폐원	연월일		
	사유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원/폐원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신고인(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장소	(전화번호)		
교습과목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강생 현황	현원	비고	
()	기간		
휴소	사유		
()	연월일		
폐소	사유		
수강생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의 휴소/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폐원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증명서의 반납 의무를 없애 학원의 폐원, 교습소의 폐소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았을 때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의 경우 종전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영수증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작성한 것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613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용도구분		전신용 두부·척추·관절 전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관절 전용 두부·척추 전용 두부·관절 전용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척추 전용	유방용
운용인 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영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